

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7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3. 6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3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·분석·평가를 적기 시행 및 후속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구성사항 일부 변경 및 회장 부재시 회장 직무대행명시(안 제3조)
- 나. 협의회 운영(요건, 개시, 종료)사항 구체적 명시(안 제6조)
- 다. 협의회 회의 개최 시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-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자연재해경감 대책협의회 구성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,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·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경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